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신설하고, 아이돌봄사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는 사람에게도 결격사유를 마련함.
- 아이돌보미를 대체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마련함(안 제2조제4호).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 적성·인성검사를 받으면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함(안 제7조).
-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등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 아이돌봄사가 아니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과 그 직원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정비함(안 제6조 제2항, 안 제11조의5제1항).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¹⁾

1) 다만, 미등록기관이라도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 등을 활용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기존의 서비스제공기관) 외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운영하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는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외에 육아도우미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등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자는 아이돌봄사의 보수교육 이수율 이유로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지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II. 검토의견

- 안 제7조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아이돌봄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는 지속적인 행위임에도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으므로, 자격 부여와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 경우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 시 수수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 제7조제7항과 통합·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7조제1항은 아이돌봄사의 자격 부여 대상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적성·인성 검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문언상 후자의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호를 나누어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u>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u>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u>아이돌봄사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u>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서 삭제> 1. <u>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u>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u>

- 안 제7조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자격증 발급 신청일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안 제7조제1항 단서는, 신청에 대한 처분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것으로,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관련

규정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現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는 아이돌보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33조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안 제7조제1항 단서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발급 신청일과 발급 여부 결정일 사이에 결격사유 유무에 차이가 있어야 함. 따라서 동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신청일에는 없었던 결격사유가 결정일에는 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② 신청일에 있었던 결격사유가 결정일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 그런데 ①의 경우 결정 당시 아이돌봄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결격사유를 확인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신청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안 제7조제1항 단서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반면, ②의 경우에는 신청일까지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가 결정일에는 그 결격사유가 소멸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²⁾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소멸한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만약 여전히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면,³⁾ ①의 경우와 같은 이유

2) 신청일까지 존재하던 결격사유로 인하여 자격이 이미 취소된 사람은 결정일 당시 무자격자이므로, 자격증을 발급할 이유가 없음은 분명한.

3) 대법원은 결격사유를 자격의 필요적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사 자격 등과 관련하여, 자격취소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같은 취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자격에 관한 대법원 2019. 5. 10.

에서 안 제7조제1항 단서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반대로 동 법의 해석상 이미 소멸한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면 안 제7조제1항 단서는 정당한 자격 보유자에 대하여 자격증 발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안 제7조제1항의 자격증 발급 부분 중 안 제7조제1항 단서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안 제7조제7항과 통합·조정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⑦ <u><전단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u>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⑦ <u>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u>

-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이 은 정)